

『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04호
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, 지역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.

-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기준을 일원화 하고, 공개공지 계획 최소면적 및 최소폭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개공지가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,
본 의원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개공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